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의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신청방법 안내

□ 대상자

○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014.3.1 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12과목 35학점 이수(보육실습 이수 필수)

※ 2014.3.1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17과목 51학점 이수(보육실습 이수 필수)

□ 자격증 신청절차

○ 자격증 신청절차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자격증 교부신청서 작성 ⇒ 수수료 결제 ⇒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

○ (교부신청서 작성)

- 기본사항 : 회원가입 시 등록 사항으로 연계(발송지 주소는 별도 지정 가능)
- 학교명 입력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회 후 입력(전문학사 또는 학사 선택)
- 전공명칭 입력 :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시 전공명칭(ex: 아동학, 아동가족학, 사회복지학 등)
- 재학기간 : 보육관련 교과목을 최초로 이수하기 시작한 시점~학위취득일자
- 학위등록번호 입력 : 학위수여증명서에 기재된 학위등록번호 입력(예정자의 경우 임의의 번호 입력 가능)

○ (수수료 결제) 신청 건당 수수료 1만원 납부(신용카드, 가상계좌, 실시간계좌이체 이용)

※ 자격증 신청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 불가

○ (서류 제출) 자격증 교부신청서, 학위수여증명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 확인서 등 자격증명서류 일체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 서류보내는 곳 : (우)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보육인력개발국 자격검정팀 담당자 앞

□ 제출서류

○ (학위수여증명서)

- (교육부 장관 인정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자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행한 학위수여증명서 원본 제출

-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자로 대학의 장이 발행한 학위수여증명서(졸업증명서) 원본 제출

※'학위예정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전적대학 졸업증명서'는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음

단, 전적대학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내역이 있는 경우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원본, 성적증명서 원본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발행 학위수여증명서(대학장 발행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 (성적증명서)

-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발행 성적증명서 원본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 성적증명서에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보육실습 이수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보육실습은 반드시 취득 점수(80점 이상 취득 시에 자격취득 가능)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습 이수 학기와 실습기간은 일치해야 함(교과목 이수학기 전후 방학 포함)

○ **(보육실습확인서)** 보육실습내용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한 후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하여 실습기관의 원장과 학과장의 직인을 동시에 날인한 원본 제출

※ 학점인정기관 등에서는 학점인정기관장(ex. 평생교육원장 등)직인 날인 가능

- (보육실습 내용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첨부서류)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어린이집 또는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인가증 사본(병설유치원의 경우 학교장 발행 공문으로 제출), 실습 지도교사 1급자격증 사본,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 보육실습생 지도확인서

※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보육실습확인서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교육청 발행 방과후 과정 운영 관련 공적서류 또는 방과후 과정 운영 여부를 작성하여 유치원장 직인을 날인한 '방과후 과정 운영 확인서'를 제출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첨부서류 순으로 취합하여 제출

- (컬러복사/스캔 서류)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등) 컬러복사(스캔)본으로 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 (성명변경 시) 변경 전·후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 원본 제출
  ex. 보육실습확인서에는 변경 전의 성명으로 발급받았으나, 학위수여증명서 등은 변경 후 성명으로 발급받은 경우 등
- (보육실습 내용)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보육실습 내용과 자격증 신청 시 제출한 보육실습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기타 서류)
  - (실습기관 인가증) 어린이집·유치원 인가증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등은 인가증 대체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병설유치원 실습 시 인가증 제출) 학교장 발행 공문으로 방과후 과정 운영 시점, 보육정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 (국공립어린이집 인가증 제출) 어린이집 위탁을 위한 '위탁계약서' 로 제출

<이외 보육교직원 자격증 관련 문의>

①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묻고답하기 게시판-FAQ/Q&A
② 보육인력 국가자격증홈페이지-열린광장 게시판-FAQ/Q&A
③ 상담전화 1661-5666(회선 2번, 자격증 관련 문의)
/1566-0233(보육인력 국가자격증홈페이지 아이디, 비밀번호 문의)

※ 전화상담은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FAQ 또는 Q&A 게시판, 카카오톡 "보육교사 자격 ' 친구추가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